제2장 난민인정절차

김종철(변호사, 기독법률가회)

**1. 누가 난민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가**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이 난민인정신청을 할 수 있다. 공항만에 있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난민임시상륙허가를 받은 후 난민인정신청을 해야 한다.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이 난민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 2).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이란 무슨 의미인가?

난민인정업무처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함)에서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을 ‘상륙 또는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다시 ‘상륙’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특히 공항만에 도착했으나 입국허가를 못 받고 대기하는 외국인의 경우 물리적으로 그 신체가 대한민국 안에 있으므로 ‘상륙’한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물리적으로 대한민국 안에 있지만 규범적으로는 입국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륙’한 것으로 안 볼 것인가? 이에 대해 법무부는 아직까지 공항만에서의 난민인정신청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지침상 ‘상륙’을 규범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의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을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거나 규범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물리적으로는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지만 규범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이 안된 공항만에 있는 외국인은 난민인정신청을 할 수 없는가? 출입국관리법 제16조의2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 난민임시상륙허가제도를 두고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이 난민협약 제1조A(2)에 규정된 이유 기타 이에 준하는 이유로 그 생명·신체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 받을 공포가 있는 영역으로부터 도피하여 곧바로 대한민국에 비호를 신청하는 경우 그 외국인을 상륙시킬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무장관의 승인을 얻어 90일의 범위내에서 난민임시상륙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법 제16조의2의 조항을 문리적으로만 해석하면,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이 “생명·신체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 받을 공포가 있는 영역으로부터 도피하여 곧바로 대한민국에 비호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난민임시상륙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선박 등’에서 내려 공항만에서 대기하고 있는 경우나, 다른 나라를 거쳐서 온 경우에는 난민임시상륙허가를 신청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과거 법무부는 ‘선박 등’에서 내려서 공항만에 있거나 다른 나라를 거쳐서 온 경우에도 난민임시상륙허가를 해준 경우가 있다.

하지만 법무부가 공항만에서 난민임을 주장하는 외국인에게 난민임시상륙허가를 내린 사례가 극히 드물 뿐 아니라(따라서 공항만에서 난민인정신청의 의사를 표시하는 사례를 접한 경우, 당해 외국인과 신속하게 접촉하여 상담하고 법무부에 난민임시상륙허가 신청의사를 밝혀야 당해 외국인이 송환되지 않는다), 공항만은 “대한민국 안”이 분명하므로 “선박 등”에서 내려 공항만에 있는 외국인은 규범적으로 입국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난민임시상륙허가신청이 아니라 난민인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선박 등[[1]](#footnote-1)”에 있는 외국인이 난민인정신청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한해 난민임시상륙허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위와 같이 “선박 등”에 있는 외국인(현재의 관행상 공항만에 있는 외국인)은 난민임시상륙허가를 받고 입국한 후에 비로소 난민인정신청을 할 수 있다. 보통 난민임시상륙허가를 내릴 때 30일의 허가기간을 주고 있으므로 그 기간 내에 난민인정신청을 해야 하고, 위 허가기간 안에 난민인정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 허가의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부록:난민사건 서식 참조).

**2. 언제까지 난민인정신청을 해야 하는가?**

-기간 제한이 없다.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 제2항은 상륙 또는 입국한 날(대한민국에 있는 동안에 난민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난민인정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난민이라고 해도 그들이 모두 난민인정제도의 존재를 알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안다고 하더라도 난민인정절차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난민인정절차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가 쉽지 않으며, 가사 한국정부가 난민인정절차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면서 까지 한국정부를 신뢰하고 난민인정절차를 이용하기로 결심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난민인정신청기간을 상륙 또는 입국한 날부터 1년으로 한정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법무부 역시 상륙 또는 입국한지 1년이 지난 후에 난민인정을 신청하더라도 접수를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이 현행법상 있지 아니하므로 난민인정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그러나 지연된 난민인정신청은 법무부나 법원에서 난민인정신청자의 난민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데 사실상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과거에는 체류자격 없이 체류하던 외국인이 난민인정신청을 하는 경우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난민인정신청을 받지 않았으나, 이러한 관행은 없어졌고 단지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고 난민인정신청을 하는 경우 난민인정신청자에게 외국인등록증 대신 난민인정신청접수증만 교부한다.

아래에서도 언급하겠지만 체류자격 없이 체류하던 중 난민인정신청을 하더라도 구금되지는 않고, 난민인정신청을 한 이후에는 통상 기타 비자인 G-1으로 자격이 변경되어 체류의 근거가 생기게 된다. 그러나 난민인정신청을 지연하던 중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구금된 이후에 난민인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금 상태에서 난민인정절차가 진행된다.

**3. 난민인정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가?**

-변호사는 난민인정신청을 대리할 수 있다.

지침은 신청인이 17세 미만이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만 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난민인정신청 뿐 아니라 난민임시상륙허가신청도 마찬가지였음), 최근에는 난민인정신청단계에서 변호사로 하여금 대리하는 것을 허용하기 시각하였다.

따라서 난민인정신청을 희망하는 외국인이 있는 경우, 난민인정신청 시 필요한 서류 등을 작성하여 위임장과 함께 제출하면서 대리 신청할 수 있다(부록-난민사건 서식 참조).

**4. 난민인정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는가?**

-난민인정신청서, 진술서, 입증자료, 여권이나 선원수첩 등 신분증명서, 얼굴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난민인정신청서(부록-난민사건 서식 참조)가 있어야 한다. 난민인정신청서는 반드시 영어나 한국어로 작성될 필요는 없으며, 난민인정신청자가 자신의 의사를 제일 잘 표현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하면 족하고 번역문과 함께 제출할 필요도 없다. 보통 난민인정신청서와 함께 진술서를 제출하는데, 진술서에는 난민인정신청자가 왜 난민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기술하면 된다.

난민인정신청을 대리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들은 상담 후에 난민인정신청서와 진술서를 한국어로 작성해 줄 수 있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난민신청자의 진술이 정확하게 난민인정신청서와 진술서에 기재되도록 해야 하며, 기재된 내용 간에 일관성을 확보 해야 하며(난민신청자의 진술의 불일치는 신빙성을 잃게 하여 난민인정불허처분의 주된 사유가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난민인정신청 단계에서 난민신청자의 주장을 입증하는 자료(국가정황보고서 등)을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그 외에 얼굴사진(35x45mm) 2장과 여권이나 선원수첩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한다(여권이나 선원 수첩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와 함께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기타 신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함).

등록한 외국인이 난민인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증을 제시해야 하며, 난민임시상륙허가를 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난민임시상륙허가서를 제시해야 한다.

**5. 어느 곳에서 난민인정신청을 해야 하는가?**

-전국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을 상대로 난민인정신청을 한다.

전국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 또는 외국인보호소에 난민신청을 할 수 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8조의2 제1항, 따라서 법무부 국적난민과에서는 난민인정신청을 받지 않고 있다). 신청기관 선택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지방에 체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인정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족 구성원은 동일 기관에 난민인정신청을 해야 하고,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외국인의 경우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외국인보호소에 난민신청을 할 수 밖에 없다.

난민인정신청 접수를 거부할 현행법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난민인정신청을 사실상 접수 거부하는 사례가 종종 일어난다. 이 때에는 접수거부가 불법적인 행정작용임을 주장하면서 일 응 난민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일 지라도 접수 후에 판단 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외국인보호소의 주소와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 **기관명** | **주소** | **우편번호** | **전화** |
| --- | --- | --- | --- |
|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172-1 | 400-718 | 032-740-7391~3032-740-7263,65(FAX)740-7010  |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21 | 158-076 | 02-2650-6212(FAX)2650-6295  |
|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 부산시 중구 충장로 14 | 600-814 | 051-461-3091~5(FAX)461-3081  |
|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 7가 1-31 (서해로 213) | 400-800 | 032-890-6406~7(FAX)890-6400  |
| 김해출입국관리사무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 618-702 | 051-979-1322(FAX)972-1614  |
|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012-6 | 443-814 | 031-695-3818(FAX)031-695-3810 |
|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277 | 690-800 | 064-722-3494(FAX)722-4045  |
|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 대구광역시 동구 안심로 117 | 701-040 | 053-980-3512(FAX)980-3580  |
|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 대전광역시 중구 목동길 150 | 301-840 | 042-220-2001(FAX)256-0496  |
|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 전남 여수시 무선로 267 | 550-110 | 061-689-5519(FAX)684-6974  |
|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 |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467-2 | 482-050 | 031-828-9301, 3(FAX)828-9461  |
|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196 | 502-838 | 062-381-0312(FAX)381-0018  |
|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포동 2-6 | 631-410 | 055-223-7074(FAX)223-7048  |
|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사암길 12(학곡리 29-1번지) | 200-882 | 033-244-7351(FAX)244-7350 |
|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새터1길 23 | 361-825 | 043-236-4905(FAX)236-4907  |
|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호성로 213 | 561-848 | 063-245-6164(FAX)245-6165  |
| 화성외국인보호소 |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39(석교리 238-7) | 445-707 | 031-8055-7000(FAX)031-355-2018  |
| 청주외국인보호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회심길 50 | 361-202 | 043-290-7512(FAX)290-7590  |

**6. 난민인정신청 후에는 어떠한 체류자격을 가지고 체류를 하게 되는가?**

-기타 비자인 G-1으로 자격이 변경된다.

난민인정신청한 후에는 기타비자에 해당하는 G-1 비자를 받게 되는데, 위 비자는 최장 6개월을 유효기간으로 하고 있으므로, 유효기간 만료일에 이를 때 까지 난민인정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난민신청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출석해서 유효기간을 갱신해야 한다. 법무부 단계의 난민인정절차가 종료한 후에도 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소계속증명원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면 유효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체류자격 없이 체류하던 중에 난민인정신청을 한 경우 범칙금(출입국관리법 제102조)을 납부하지 않으면 G-1 비자를 받지 못하고, 난민인정신청 접수증만 교부 받아 그것으로 신분증에 갈음하게 된다.

**7. 난민인정신청을 한 후에 불법체류 등을 이유로 구금되지는 않는가?**

-불법입국 또는 불법체류 하였다고 하더라도 난민인정신청 하는 외국인을 구금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구금된 상태에서 난민인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보호일시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난민협약 제31조 제1항은 난민이 출입국관리법 규정에 반하여 입국하고 체류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벌(형벌로 번역되어 있으나 행정벌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제재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을 주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법무부는 아직까지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체류하다가 난민인정신청을 하였거나 밀입국 하여 체류하다가 난민인정신청을 한 경우에라도 해당 외국인을 구금(실질은 구금이지만 현행법상 외국인의 구금을 외국인에 대한 보호라고 칭하고 있다)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난민이라고 하더라도 구금되는 경우가 있는데,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단속이 되어 구금된 이후에 난민인정신청을 하는 경우, 난민인정신청을 한 이후에 허가 없이 취업하는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단속되어 구금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난민인정신청을 하는 등 허위 서류를 행사하여 난민인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난민인정신청자가 구금된 상태에서 난민인정절차가 진행된다.

위와 같이 난민인정신청자가 구금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65조에 근거하여 보호 일시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보호일시해제신청 할 때에는 보호일시해제신청서(부록:난민사건 서식 참조), 신청사유서, 보증인의 신원보증서,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보호일시해제결정시 납부해야 하는 보증금(상한 1000만원)에 대한 잔고증명서 내지 수표사본을 해당 난민신청자에게 보호(구금)처분을 행한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내지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8. 난민인정신청이 접수된 이후에 어떠한 절차가 진행되는가?**

-난민신청자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고, 난민 담당공무원은 난민신청자를 면담한 후 조사 보고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법무부장관은 위 조사를 바탕으로 심사하여 난민인정여부를 결정한다. 위 결정은 세가지가 있는데, 난민인정결정, 난민불허결정, 인도적 체류허가 결정이 그것이다.

가. 신체검사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난민인정신청을 한 외국인에 대해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서 신체검사를 받아 그 검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나. 면담 및 사실조사

난민신청자가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직후에 난민담당공무원이 위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에 대해 즉석에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난민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후에 난민신청자를 출석시켜 면담을 진행한다.

난민의 경우 맨손으로 국적국을 떠나올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므로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어려워 난민의 진술이 난민인정판단에 결정적인, 심지어는 유일한 자료가 된다(이러한 난민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난민요건 입증과 관련해서는 ‘의심스러울 때에는 난민신청자의 이익으로the benefit of the doubt’가 적용된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난민신청자의 신청서와 진술서도 중요하지만 난민담당공무원과의 면담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난민인정신청을 대리하는 경우 난민신청자가 면담과정에서 난민요건에 맞추어 제대로 진술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해야 할 뿐 아니라 이미 제출한 난민인정신청서와 진술서와 입증자료와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미리 도와줘야 한다. 또한 위 면담시 난민신청자가 한국어나 제2외국어를 잘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모국어 통역관으로 하여금 난민의 진술을 통역하도록 해야 한다(또한 기독교 개종자인 난민신청자의 진술을 무슬림 통역관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는 것과 같이, 난민신청자에 적대적인 그룹 출신의 통역관이 선정되지 않도록 살펴야 한다). 또한 여자 난민신청자의 경우에는 될 수 있는 한 여자 공무원이 면담을 진행하도록 해야 하고, 강간 등의 박해를 경험한 난민신청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여자 공무원이 면담을 하도록 해야 한다. 변호사는 면담과정에서 난민신청자와 동석할 수 있으므로 난민신청자의 진술이 제대로 통역이 되고 있는지, 난민인정신청자가 진술한 대로 조서에 기록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면담 공무원에게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특히 면담 후 면담조서 말미에 난민신청자가 서명을 하기 전에 난민조서를 면밀히 살펴 난민신청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가 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난민 담당공무원은 위와 같이 면담을 진행하고 난인인정신청 사항에 대해 사실조사를 한 후 조사 보고서를 법무부장관(법무부 국적난민과)에 제출한다(현재에는 실질적으로는 국적난민과에서 심사하는 구조이나 차츰 난민을 면담한 공무원이 조사를 행한 후 심사하는 구조로 바뀔 전망이다)

다. 심사 및 결정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국적·통합 정책단장은 난민담당공무원의 조사보고서 등을 기초로 난민인정여부를 심사한 후 난민인정 등을 결정한다. 난민협약상의 난민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난민인정결정을 한 후에 난민인정증명서를 교부한다.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한 경우 간단한 이유를 부기하여 난민불인정통지서를 교부한다(그러나 위 이유 부가는 난민인정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닌 한글로만 기재되는 문제가 있다). 난민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인도적인 이유로 인도적 체류 허가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9. 난민인정불허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가?**

-난민불인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90일 이내에 난민불허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다.

난민인정신청자는 난민불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와 이의신청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서 난민인정 신청을 접수한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물론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은 채 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난민인정불허처분을 취소하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그러나 대개의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불허처분이 통지된 이후 90일 이내에 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다). 만일 난민불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체류자격연장 등 불허결정통지서를 교부하는데, 난민신청자가 소를 제기할 예정이라는 진술서를 제출한 경우 90일 내에서 출국유예를 해 준다.

최근에 난민신청자에게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 통지를 공시송달에 의하여 제소기간을 도과하도록 만드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서 문제가 된다.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살펴서 다투어야 할 것이다.

**10.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와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협의회의 협의 결과를 존중해서 결정한다. 이의신청에 대해 이의 없음 결정을 한 경우 체류자격연장 등 불허결정통지서를 교부한다.

법무부장관은 이의신청에 대해 심사와 결정을 하기 위해 난민인정협의회에 협의를 요구하는데, 난민인정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신청인, 참고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신청인 등이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는 없고, 대개 형식적으로 협의가 이루어 진다(일본은 우리와 달리 난민인정협의회에 해당하는 기관이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그리고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협의회의 협의 결과를 존중하여 난민인정여부를 결정한다.

난민인정신청을 대리하는 변호사는 최초의 난민심사 단계와 난민인정협의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단계에서 법률 의견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이의신청에 대해 이유 있음으로 결정한 경우 난민신청자에게 난민인정증명서를 교부하나, 이유 없음으로 결정한 경우 이의신청에 대해 앞에서 언급한 ‘체류자격연장 등 불허결정통지서’를 교부하고 난민신청자가 소 제기할 예정이라는 진술서를 제출한 경우 90일 내에서 출국유예를 하여 소송을 준비하도록 하고, 소송이 제기 된 이후에는 소계속증명원을 제출 받아 체류기간을 법원에서의 난민인정절차가 종료할 때 까지 연장해 준다.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불허결정과 난민인정결정 뿐 아니라 인도적체류허가 결정도 내릴 수 있다. 절차를 한 눈에 보면 다음과 같다(법무부 자료)



**11. 난민인정절차가 진행 중에 난민신청자는 어떠한 처우를 받는가?**

-강제출국되지 않다는 것 이외에 사회적 처우는 없으나, 난민인정신청후 1년이 지나도록 최초의 난민인정절차가 종료하지 않은 경우 취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외국인근로자등소외계층무료진료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출입국관리와 관련해서는 난민인정신청인이 강제퇴거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난민인정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강제 출국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회적 처우와 관련해서는 주거지원도 없고, 생계지원도 없으며, 원칙적으로 취업도 금지된다.

2010년부터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이 시행되어 난민인정신청을 한지 1년이 지나도록 난민인정절차가 종료하지 않은 경우[[2]](#footnote-2)(여기서 난민인정절차라 함은 이의신청절차는 포함이 안된 제1차 난민심사절차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무부는 해석한다), 난민인정신청자는 취업을 희망하는 곳의 고용주와 근로 계약을 맺고 그 고용계약서와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 취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3]](#footnote-3)(그러나 비자의 유형이 바뀌지 않은 채 G-1 비자만을 가지고 근로계약을 체결하기가 사실상 힘들어 취업허가를 받는 난민신청자는 아주 소수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취업허가를 받은 난민신청자는 3개월 이후에 다시 취업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2010년 6월부터 외국인근로자등소외계층무료진료사업의 대상에 난민신청자도 포함되었으나, 위 사업의 예산이 많지 않을 뿐 아니라 입원한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한계가 있다.

**12. 난민인정결정을 받은 외국인은 어떠한 처우를 받는가?**

-유효기간 3년의 F-2비자를 받게 되며 난민협약에서 규정한 제반 권리들을 누리도록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관련 국내법이 정비되지 못한 상태이다.

3년의 유효기간을 가진 거주비자 F-2비자를 받게 되며, 3년마다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외국인이 난민인정결정을 받은 경우 F-2비자를 주는 것 이외에 강제퇴거명령을 취소하고 그 보호를 해제해야 한다.

기타 사회적 처우에 관해서는 난민협약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일정한 권리에 대해서는 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보장을 받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되거나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권리 같은 것들이 그러한 예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경우 난민인정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관련 국내법이 아직 정비되지 못한 상태이다.

또한 난민인정자는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외국을 여행할 수 있으며 한국에 재입국하기 위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난민인정자는 난민여행증명서 발급신청서(부록:난민사건 서식 참조), 난민인정증명서 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얼굴사진(35x45mm) 2장을 제출해야 한다. 위 난민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1. “선박등”이라 함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밖의 영토 사이에서 사람 또는 물건을 수송하는 선박· 항공기·기차·자동차 기타 교통기관을 말한다(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8호) [↑](#footnote-ref-1)
2. 예외적으로 난민신청자 중에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피부양자를 부양해야 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무소장 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취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 역시 취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footnote-ref-2)
3. 취업허가(엄밀히 말하면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로는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과 같은 신분증, 체류자역외 활동허가 신청서, 고용계약서 사본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이다. [↑](#footnote-ref-3)